

의안번호	2200449
의 퇴 인	주호영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.
추계번호	24B0829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 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	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(제3항 후단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2	안 제19조 (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) 제2항	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<u>종전부지</u>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※ 현행법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	재량규정
3	안 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 제2항	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<u>지원</u>할 ※ 현행법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	의무규정
4	안 제29조의2 (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) 신설	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2항·제3항 및 제55조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재정위 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29조의3 (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) 신설	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도 불구 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함(제4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 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조(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) 제2항	
3	안 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 제2항	
4	안 제29조의2(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) 신설	
5	안 제29조의3(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(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)

-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¹⁾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공주택"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기금"이라 한다)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,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

가.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하 "공공임대주택"이라 한다)

-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비용 추계를 위해서는 전체 등록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지원 세대, 건축비 및 부대공사 사업비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관련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곤란함

□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주체에 국가 포함 (안 제19조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주체에 국가가 포함될 경우, 이를 위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원 내용을 알 수 없음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지원 시점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2030년 이후로 예상

□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화(안 제20조제2항)

- 개정안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²⁾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

2)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이전사업은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(기부채납), 제55조(양여)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.

② 사업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- 국가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와 용도 폐지될 기존 군 공항 관련 재산의 가액을 알 수 없어 실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지 여부 및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

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 면제 등(안 제29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³⁾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성 및 필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알 수 없음

□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의무 및 보전 부담금 면제(안 제2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⁴⁾ 및 제21조⁵⁾에 따른 훼손지 복구의

-
- 3)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 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 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 4. 지방채의 차환
 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 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
- 4)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)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(이하 "해제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(이하 "훼손지"라 한다)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[바다·하천·도랑·제방(堤防) 및 도로 등 개

무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국가의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6항 및 제21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고, 훼손지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훼손지 복구 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고,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또는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추계할 수 없음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대구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30년경 이루어질 계획(대구시 입장)이고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 후 6개월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, 부담금 부과 및 부담금 수입 감소는 2030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임

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]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.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

1의2.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(地目)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.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는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

3.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,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"개발계획의 결정"이라 한다)을 받은 개발사업자(이하 "개발사업자"라 한다)가 복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.

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5)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(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한다.

1.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